

함께 혁신, 함께 성공, 새로운 전북

'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침



'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침

【 목 적 】

- 자연재해(풍수해, 폭염, 설해 등), 화재,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

1. 추진방향

- 자연재해, 화재,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·축사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
-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지속 확대로 신속한 피해회복 기틀 마련

2. 근거법령

-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, 제8조, 제19조

3. 사업개요

- 사업주관 : 시장·군수
-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- 사 업 비 : 14,000백만원[국비 <7,000>, 도비 1,400, 시군비 2,543, 자담 3,057]
 - 보조율 : 국비 50%, 도비 10%, 시군비 15%, 자부담 25%
- 사업내용 :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 지방비 지원
- 지원한도 : 4,000천원 이내(국비 2,000, 도비 400, 시군비 600, 자부담 1,000)/호·법인
 - ※ 국비는 국가직접 지원이며, 자부담분 시·군비 대체 가능
 - 시·군비 추가 확보 시 사전 보고 후 지방비 보조율 조정 (도비 지원한도 400천원/호·법인)
 - ※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 한하여 총 보험료의 50%이내 5천만원 한도 지원

【 시·군비 추가지원 】

- ▶ 남원시 : 4,000천원(국비 2,000, 도비 400, 시군비 1,000, 자담 600)
 - 보조율 : 국비 50%, 도비 10%, 시군비 25%, 자담 15%
- ▶ 진안군 : 4,000천원(국비 2,000, 도비 400, 시군비 1,000, 자담 600)
 - 보조율 : 국비 50%, 도비 10%, 시군비 25%, 자담 15%
- ▶ 장수군 : 4,000천원(국비 2,000, 도비 400, 시군비 1,000, 자담 600)
 - 보조율 : 국비 50%, 도비 10%, 시군비 25%, 자담 15%
- ▶ 부안군 : 4,000천원(국비 2,000, 도비 400, 시군비 800, 자담 800)
 - 보조율 : 국비 50%, 도비 10%, 시군비 20%, 자담 10%

4. 지원조건

○ 지원대상 :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

*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'농업경영체' 및 축산업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

- 대상축종(16종) : 소, 돼지, 말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타조, 거위, 관상조, 사슴, 양, 꿀벌, 토끼, 오소리

○ 지방비 지원 제한사항

- 「축산법」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대상 농가 중 미등록·미허가 농가 지원 제외
- 소 1천두, 돼지 1만두(비육돈*기준), 닭·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
* 비육돈 : 새끼돼지, 육성돈, 비육돈 (축산법 시행령 별표1)
-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축사특약 지원 제외,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이 주택 용도일 경우 가축재해보험 정부 지원 제외

○ 지방비(도비, 시군비) 지원기준

- (지방비 지원기준) 시군별 농업인(주민등록번호)·법인(법인등록번호)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
* 지방비 예산 부족 및 선착순 지원에 따라, 예산 조기소진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 축산농가에 반사회보, 보도자료, 각종 교육등 홍보 철저(1~2월중)
- (지원지역 기준) 축산업 허가(등록)증 상 소재지 관할 시·군에서 지원하며,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(예: 꿀벌)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(가축 및 축산시설물)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
- (보험료 증액) 보험기간 중 계약변경으로 보험료 증액 시 추가 지방비 지원은 불가

※ 재해보험사업자(6개) : NH농협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DB손해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삼성화재

5. 세부추진계획

□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절차

《 도 》

-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 추진 지도
-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교부, 사업완료 후 정산

《시·군》

- 선착순 지원 및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하여 홍보 철저
- 지원기준 적합여부 확인(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, 농업경영체 정보 등)
- 보조금(지방비) 지급 (분기별 정산 보험료 보험사 지급)
 -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대상자 적격여부, 적정 보험료 산정 등을 확인 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보험사에 정산입금 조치(조기 집행 등 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)
- 시·군 가축재해보험 담당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.go.kr) 가입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(<http://api.apfs.kr>) 시스템 활용 필수
 - 농가 가입정보, 지방비 잔액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험사 보험료 정산자료(agrix 커뮤니티 업무공지 게시판)에 따라 적기 지방비 지원

《보험사》

- 시군에서 요청 시 가입자 내역 등 재해보험 관련 자료 제출 협조
- 계약 전·후 알릴 의무 이행과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농가 설명
- 보험가입 처리 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시·군에 지방비 청구

※ 보험가입 절차

- 보험가입안내(대리점 등) → 가입신청(농가·법인) → 사전 현지확인(대리점 등) →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(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) →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(대리점 등)

* 사전 현지확인: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생략 가능

□ 자금집행 및 정산

- 시장·군수는 부적정한 대상자가 예산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보조금은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농가·법인당 지원액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홍보
- 시장·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(서식 2)

□ 추진일정

- 2024년도 사업 지침 통보(도 → 시·군) : '24. 1월
- 시·군 보조금 교부신청(시·군 → 도) : '24. 1. 24일한 (서식 1)
-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(도 → 시·군) : '24. 2. ~ 10월(분할 송금)
- 사업정산보고(시·군 → 도) : '25. 1월중 (서식 2)

□ 행정사항

- 시·군에서는 수시로 배정된 사업비를 점검하여 보조금이 초과 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·점검 철저
-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가 많거나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시·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가능
※ 시·군비 추가 확보시 반드시 사전보고 후 지방비 보조율 조정 (도비 지원한도 : 400천원)
-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농가에서 보험사업자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
-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농가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게재, 이장 회보, 반상회보, 마을방송 활용 및 축산분야 농가교육 시 적극 홍보

※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세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「2024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」에 따름.

【 별첨 】

시 · 군별 세부내역

(단위 : 건, 천원)

구 분	사업량	예 산 액				
		계	국 비	도 비	시군비	자부담
합 계	3,500	14,000,000	7,000,000	1,400,000	2,543,200	3,056,800
전주시	13	50,000	<25,000>	5,000	7,500	12,500
군산시	62	250,000	<125,000>	25,000	37,500	62,500
익산시	395	1,580,000	<790,000>	158,000	237,000	395,000
정읍시	420	1,680,000	<840,000>	168,000	252,000	420,000
남원시	495	1,980,000	<990,000>	198,000	495,000	297,000
김제시	387	1,548,000	<774,000>	154,800	232,200	387,000
완주군	193	770,000	<385,000>	77,000	115,500	192,500
진안군	178	712,000	<356,000>	71,200	178,000	106,800
무주군	115	460,000	<230,000>	46,000	69,000	115,000
장수군	290	1,160,000	<580,000>	116,000	290,000	174,000
임실군	220	880,000	<440,000>	88,000	132,000	220,000
순창군	142	570,000	<285,000>	57,000	85,500	142,500
고창군	300	1,200,000	<600,000>	120,000	180,000	300,000
부안군	290	1,160,000	<580,000>	116,000	232,000	232,000